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(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

1. 벤처투자조합 투자기업 거래대상 확대 (안 제37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창업·벤처기업의 거래대상을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와 펀드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후속투자 및 M&A 활성화 유도

* 기존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와 펀드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에 매각하기 위해 조합원 전원 사전동의 등을 거쳐야 함

※ 근거법령 :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(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예외 규정으로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투자 의무 인정 대상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별도 없음